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5
----------	-------

제출년월일 : 2012.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과 우리구 행정기구 일부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 운영업무의 효율적 추진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영상정보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추가

나. 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 관련 사항 규정

-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전략위원회』기능에 추가
- 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사항 신설
- 상위 관련 규정에 근거,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 필요
- 라. 영상정보보호의 원칙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 규정 마련

3. 개정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법률 제10465호, 2012.3.30)

나. 합 의 : 해당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없음

7.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2. 5. 24 ~ 6. 13(제출된 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수정의결(2012. 8. 2)

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CCTV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에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제3호 중 “개인정보보호”를 “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보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보화 추진”을 “정보화 추진 및 CCTV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의원·공무원”을 “공무원·지역주민·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8조제4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CCTV 설치장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CCTV의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심의
6. CCTV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7. 통합 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8.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9. 그 외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조정

제13조제3항 중 “정보보호”를 “정보보호·개인영상정보”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7.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17. (현행과 같음)</p> <p><u>18.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u></p> <p><u>19.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 관제센터"(이하 "CCTV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u></p>
<p>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p> <p>1. ~ 2. (생략)</p> <p>3.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 보호, <u>개인정보보호</u> 등의 대책 마련</p>	<p>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보호</u> ----- -----</p>

현행	개정안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u>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u>구</u>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u>구의원·공무원</u>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⑤ ~ ⑦ (생략)</p>	<p>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 <u>정보화 추진 및 CCTV 설치·운영에</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u>공무원·지역주민·관계 전문가</u> -----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CCTV 설치장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u></p> <p>5. <u>CCTV의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심의</u></p> <p>6. <u>CCTV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u></p> <p>7. <u>통합 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4. 그 밖의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3조(보안관리) ① ~ ② (생략)</p> <p>③ 정보화전담부서장은 <u>정보보호</u> 및 정보통합센터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p> <p>제23조(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① ~ ② (생략)</p> <p><u><신설></u></p>	<p>8.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시 심의</p> <p>9. 그 외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조정</p> <p>10. ----- -----</p> <p>제13조(보안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정보보호·개인영상정보</u>----- ----- -----</p> <p>제23조(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u>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u></p>